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자동차 종합검사 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원의 육안 확인만으로 재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은 자동차 소유자가 온라인으로 증빙사진을 제출하여 재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재검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산정할 때,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하여 재검사 기간을 확대하는 등 종합검사에 대한 재검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자동변속기의 기술개발로 인해 변속기 오일의 오염도 우려가 낮으며, 차량 제조사 별로 변속기 오일의 규격이 달라서 검사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변속기 오일 오염도의 검사 항목을 진단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일부항목의 재검사를 전산정보처

리 조직을 통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제1항, 제2항)

나. 종합검사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재검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산정 시,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제외(안 제7조제1항)

다. 안전진단 기준 가운데 “변속기 오일 오염도”를 “변속기 오일 오염도(진단 가능한 경우에 한함)”으로 변경(안 별지제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 중 “제17호”를 “제19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10일”을 각각 “10일(「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재검사를”을 “재검사(제1항 단서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재검사의 경우 영상자료의 확인)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재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중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을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가 될”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운행정지명령)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운행정지명령서를 발

급하고 해당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의2의 자동차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자동차운행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되며,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떼어내지 못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 “아니하여 법 제37조제3항”을 “않아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변속기 오일 오염도”를 “변속기 오일 오염도(진단 가능한 경우에 한함)”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1호 중 “등록번호판이 영치될”을 “운행정지가 될”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을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서식 제3호 중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제84조제1항제3호”를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제84조제3항제1호”로, “별표 2에 따라 30만원”을 “별표 2 제2호바목에 따라 250만원 이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사 기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자동차운행정지표지](#)(제64조제1항 관련)

자 동 차 운 행 정 지
자동차등록번호:
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합니다.
※ 이 표지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한 경우,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가 아니면 떼어내지 못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비고

- 바탕색은 백색으로, 문자는 적색으로 합니다.
- 이 표지는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붙입니다.

134mm×190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2서식]

제 호		
운행정지명령서		
소 유 자	①성명(명칭)	(운전자성명 :)
	②주 소	
③자 동 차 등 록 번 호		
위 반	④일 시	
	⑤장 소	
	⑥내 용	
⑦운 행 정 지 기 간		. . . ~ . . . (일간)
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 [] 제37조제2항 후단 법」 [] 제37조제3항 전단 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주 : 1. 이 명령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 목적을 위한 임시운행 외에는 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2. 이 운행정지명령 대상인 자동차를 임의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81조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종합검사의 실시) ①·② (생략) ③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를 할 때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판정을 받은 사항이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제3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한 후 부적합한 사항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제5조(종합검사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제19호----- ----- -----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재검사) ①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종합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제7조(재검사) ① ----- ----- ----- ----- ----- ----- ----- -----

게 제5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제
6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
차기능 종합진단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
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
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
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2) (생략)

나.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
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
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
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1. -----

가. -----

----- 10일(「공
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
은 제외한다.) ---

1)·2) (현행과 같음)

나. -----

----- 10일(「공
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

2.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
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
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 판정
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
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3
조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재검사를 하고 적합 여부를 판
정하여야 한다.

은 제외한다.) ---
2. -----

----- 10일(「공휴일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
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80조제2항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재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

재검사(제1항 단서에 따른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재검사의
경우 영상자료의 확인)를 ---.

③ ~ ⑤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생략)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u>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u>	② ----- ----- <u>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가 될</u> ----- ---
<u><신설></u>	제12조의2(운행정지명령)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해당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의2의 자동차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자동차운행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되며,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떼어내지 못한다.

제13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u>아니하여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영치증에 기록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u>	제13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 ----- ----- ----- <u>않아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u> ----- ----- ----- ----- ----- <u>발급해야</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